

『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정도 의원 외 15명

2. 제안이유

-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후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를 대면보고토록 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감사 실시 및 집행기관의 견제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일부 규정에 대한 자구를 수정·보완하여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(안 제18조)
 - 시정요구 및 이송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회에 출석하여 보고
- 기타 가지번호 규정 정비, 문구 정비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일부 미비한 규정에 대한 문구를 정비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결과와 시정요구를 해당기관으로 요청한 후 그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회에 직접 출석하여 대면보고 하도록 변경

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는 집행기관의 역할을 다하도록 개정하였으며, 이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5. 참고사항

○ 의회 출석, 상임위 보고 : 대부분 지자체 “보고”로 명시

- 남원시의회 :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
: 제257회 임시회(2023.3.9.~3.24.) / 소관 상임위별 보고
- 태안군의회 :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
: 제294회 임시회(2023.3.27.~4.6.) / 소관 상임위별 보고
- 인천 남동구의회 :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
: 제285회 임시회(2023.4.4.~4.18.) / 소관 상임위별 보고
- 홍천군의회 :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
: 제336회 임시회(2023.3.20.~3.27) / 본회의 보고

지방의회운영[p1138]

지방의회로부터 감사결과를 이송받은 단체장 또는 해당 기관장은 이송된 사항들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단체장 및 피감사기관장의 「처리결과보고서」가 의회에 접수되면, 의장은 이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에게 배부한다. **일부의회에서는 감사한 위원회에 감사처리결과를 구두로 보고하고, 이에 대해 질의·답변을 거치기도 한다.**